KOSHA GUIDE

H - 179 - 2016

아세톤의 생물학적 노출지표물질 분석에 관한 기술지침

2016. 6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

- ㅇ 작성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건강연구실 이미영
- O 제·개정 경과
 - 2016년 6월 KOSHA Guide 산업의학분야 제정위원회 심의(제정)
- ㅇ 관련규격 및 자료
 -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. 근로자 건강진단 실무지침: 제1권 특수건강진단의 개요. 보건분야-기술자료 연구원 2016-연구원-277, 2016
 -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. 생물학적 노출평가 기준 및 분석방법 연구 I: 크실렌 등 유기용제 16종. 보건분야-연구자료 연구원 2010-64-880. 2010
- o 관련법규·규칙·고시 등
 - 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」제100조 제4항 별표 13(특수건강진단·배치전건강진단· 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)
 - 고용노동부고시「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 및 기관평가에 관한 고시」
 - 고용노동부고시「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」
 -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. 「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」제1권 특수 건강진단 개요. 보건분야-기술자료 연구원 2016-연구원-277. 2016
- ㅇ 기술지침의 적용 및 문의
 - 이 기술지침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(www. kosha.or.kr)의 안전보건기술지침 소관분야별 문의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 - 동 지침 내에서 인용된 관련규격 및 자료, 법규 등에 관하여 최근 개정본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개정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공표일자 : 2016년 6월 30일

제 정 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

KOSHA GUIDE H - 179 - 2016

아세톤의 생물학적 노출지표물질 분석에 관한 기술지침

1. 목 적

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(이하 "법"이라고 한다) 제43조(건강진단) 및 같은 법 시행 규칙(이하 "시행규칙"이라고 한다) 제100조(검사항목 및 실시방법) 제4항 별표 13, 고용노동부고시「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 및 기관평가에 관한 고시」및 고용노동부고시「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」에 따라 아세톤에 노출된 근로자의 생물학적 노출평가와 관련된 생물학적 노출지표 물질의 분석 방법을 제안함을 목적으로 한다.

2. 적용범위

이 지침은 법, 시행규칙 및 고용노동부고시에 따라 실시하는 근로자 건강진단 중 아세톤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생물학적 노출평가에 적용한다.

3. 용어의 정의

- (1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- (가) "생물학적 노출평가"란 혈액, 소변 등 생체시료로부터 유해물질 자체 또는 유해물질의 대사산물이나 생화학적 변화산물 등을 분석하여 유해물질 노출에 의한 체내 흡수정도나 건강영향 가능성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.
- (나) "생물학적 노출지표 물질"이란 생물학적 노출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생체 흡수정도를 반영하는 물질로서 유해물질 자체나 그 대사산물, 생화학적 변화물 등을 말한다.
- (다) "정밀도(Precision)"란 일정한 물질에 대하여 반복측정·분석을 했을 때 나타나는 자료분석치의 변동크기를 나타낸다. 이 경우 같은 조건에서 측정했을 때 일어나는 우연오차(Random error)에 의한 분산(Dispersion)의 정도를 측정값의 변이계수 (Coefficient of variation)로 표시한다.
- (라) "정확도(Accuracy)"란 분석치가 참값에 얼마나 접근하였는지를 수치로 표현한 것이다. 다만, 인증표준물질이 있는 경우는 상대오차로 표시하고, 인증표준물질 이 없는 경우는 시료에 첨가한 값으로부터 구한 평균회수율로 표시한다.

KOSHA GUIDE

H - 179 - 2016

- (마) "검출한계(Limit of detection: LOD)"란 공시료 신호값(Blank signal, background signal)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다른 신호값(Signal)을 나타낼 수 있는 최소의 농도를 말한다.
- (2) 그밖에 용어의 뜻은 이 지침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,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및 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다.

4. 분석장비

분석장비는 헤드스페이스 가스크로마토그라프-불꽃이온화검출기(Headspace gas chromatograph-flame ionization detector, HS GC-FID)를 사용한다.

5. 분석방법

5.1 분석 원리 및 시료채취

(1) 분석 원리

아세톤은 호흡기가 주된 흡수 경로이다. 노출 경로에 상관없이 주된 배설 경로는 호흡기이며, 흡수된 아세톤 중 변화하지 않은 아세톤이 소변으로 배출되므로(1차 반감기 3시간 이하, 2차 반감기 3.5시간) 소변 중에 존재하는 아세톤을 헤드스페이스 GC-FID로 분석한다.

(2) 시료의 채취

(가) 시료 채취 시기

소변 시료는 당일 작업종료 2시간 전부터 작업종료 사이에 채취한다.

- (나) 시료 채취 요령
- ① 채취 용기는 밀봉이 가능한 용기를 사용하고, 시료는 10 mL 이상 채취하며, 휘 발성 성분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용기 상부까지 시료를 가득 채운다.
- ② 채취한 시료를 밀봉하여 4 ℃(2~8 ℃)를 유지한 상태로 이동하고 보관하며, 채취 후 5 일 이내에 분석한다.

5.2 헤드스페이스 가스크로마토그라피 불꽃이온화검출법

(1) 기구 및 시약

(가) 기구

- ① 용량플라스크 100 mL
- ② 용량플라스크 10 mL
- ③ 피펫 10 mL
- ④ 마이크로피펫 500~2,500 μL
- ④ 헤드스페이스 바이알 20 mL

(나) 시약

- ① 아세톤($d_4^{25} = 0.788$)
- ② 염화나트륨
- ③ 탈이온수(18 MΩ·cm 이상)

(2) 시약 조제

(가) 표준용액

- ① 아세톤 0.5 g(0.63 mL)을 100 mL 용량플라스크에 옮기고 탈이온수로 표선을 채워 5,000 mg/L의 표준용액을 만든다. 이것을 표준용액 원액으로 한다.
- ② 표준용액 원액을 10 mL 취하여 100 mL 용량플라스크에 옮기고 탈이온수로 표선을 채워 500 mg/L의 표준용액을 만든다. 500 mg/L의 표준용액을 각각 1, 2, 3 mL 취하여 이를 10 mL 용량플라스크에서 희석하여 50, 100, 150 mg/L의 검량선용 표준용액으로 한다. 이 3가지 농도의 표준용액을 검량선용 표준용액으로 한다. 증류수를 공시료로 한다.

(3) 시료 전처리

- (가) 시료를 교반기로 3분간 잘 섞어준다.
- (나) 염화나트륨 약 1 g을 헤드스페이스 바이알에 옮기고 여기에 표준용액 및 시료 2 mL를 취하여 넣는다.
- (다) 바이알을 밀봉한 후 헤드스페이스 GC용 검액으로 한다.

KOSHA GUIDE H - 179 - 2016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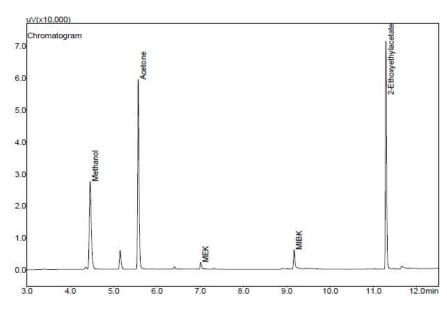
- (4) 가스크로마토그라프 분석 조건
- (가) 컬럼: Rtx-624 60 m × 0.25 mm, 1.4 μm 막 두께의 컬럼,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으로 분리가 가능한 컬럼
- (나) 온도조건 : 오븐 40 ℃(1분) → 15 ℃/분 → 240 ℃(1분)

주입구 230 °C 검출기 260 °C

- (다) 컬럼 유속 : 2 mL/분
- (라) 분할주입비율: 1/10
- (마) 헤드스페이스 조건
- ① 온도
 - 시료 : 70 ℃
 - 주입관 : 150 ℃
 - 밸브 : 150 ℃
- ② 가열시간: 10분
- ③ 시료주입량: 1 mL
- (바) 검출기 : 불꽃이온화검출기

KOSHA GUIDE H - 179 - 2016

(5) 분석 결과 크로마토그램



[그림 1] 소변 중 아세톤의 GC-FID 크로마토그램

(6) 농도 계산

검량선용 표준용액의 농도를 가로(x)축으로 하고 표준용액의 피크 면적을 세로(y)축으로 하여 검량선을 작성하고, y=ax+b의 회귀방정식에 시료의 피크 면적을 대입하여 시료 중 포함된 아세톤의 농도(mg/L)를 구한다.

(7) 생물학적 노출 평가 기준

기준값 : 80 mg/L

(8) 정밀도(예)

	농도(mg/L)	변이계수(%)*
아세톤	50	7.2
	100	6.8

^{*} 같은 농도의 시료를 7개 분석한 결과로부터 구함.

(9) 정확도(예)

	농도(mg/L)	회수율(%)*
아세톤	50	97.2
	100	99.2

* 같은 농도의 시료를 7개 분석한 결과로부터 구함.

(10) 검출한계(예)

(가) 검출한계

3.7 mg/L(S/N H) 3)1)

(나) 산출방법

검량선에 의한 표준용액의 농도와 면적간의 회귀식을 구하고 이 회귀식의 표준 오차와 기울기를 이용하여 검출한계를 산출한다.

$$LOD = 3 \times \frac{\sqrt{\frac{\sum (Y_{ei} - Y_i)^2}{N - 2}}}{b}$$

 Y_{ei} : 회귀식에 의해 구한 각 시료량에 대한 반응값

 Y_i : 각 시료량에 대한 반응값

N : 표준용액 시료 수b : 회귀방정식의 x계수

¹⁾ 배경 반응값(noise, N)의 3배인 시료 반응값(signal, S)을 나타내는 농도를 검출한계로 함.